

산학협력중점교수운영규정

제정 2012.2.13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교원인사규정 제5조⑥항에 근거한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의무, 처우, 임용기간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본 규정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라 함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산학협력 진화형 교원인사제도의 하나로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, 연구, 창업·취업지원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산학협력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한다.

제3조(구분)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형태에 따라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와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된다.

② 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임용방식에 따라 최초 임용시 산학협력을 목적으로 채용된 채용형과 임용 후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된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구분할 수 있다.

③ 비전임교원인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전일제로 근무하는 경우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인정할 수 있다.

제4조(자격)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고등교육법의 전문대학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
2. 산업체 경력 10년 이상인 자
3.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4. 임용공고시 세부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

② 위 ①항 2호의 산업체 경력이란 민간 산업체, 국가기관,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을 의미한다.

③ 위 ②항의 산업체 경력 인정기준은 「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의 산업체 경력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.

제5조(임용 및 지정 절차) ①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은 공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공개채용시 교원신규임용공개채용심사지침에 의하며, 특별채용시에는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.

②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할 경우는 스쿨원장의 추천(서식 1)과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, 총장승인의 절차를 거쳐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한다.

③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재임용 기준과 절차는 전임교원의 경우, 전임교원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, 비전임교원의 경우, 비전임교원의 재임용 기준과 절차를 적용한다.

④ 전임교원 중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지정은 1년 단위로 한다. 단, 시행 첫 해는 예외로 한다.

⑤ 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승진임용은 우리대학 교원인사규정, 교원인사규정시행세칙, 전임교수승진임용지침에 준하여 동일하게 실시한다.

제6조(임무) ①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학협력교육활동, 산학협력연구활동, 산학협력봉사활동 등을 실시

한다.

②산학협력교육활동이라 함은 현장실습지도, 캡스톤디자인지도, 위탁교육프로그램 개발, 학생취업 연계, 학생창업 지도 등을 말한다.

③산학협력연구활동이라 함은 기술이전, 특허등록, 산업체 연구비 수혜, 기업부설연구소 유치, 교원 창업, 신기술 제품 인증 등을 말한다.

④산학협력봉사활동이라 함은 기술영경영자문, 가족회사 유치 및 관리, 산업체 파견 활동, 산업체 방문 특강 등을 말한다.

⑤산학협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강의시수를 30%이상 감면할 수 있다.

제7조(평가) 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의 평가는 우리대학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.

제8조(처우) ①전임교원 중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지정되어 지정형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되더라도 전임교원으로서의 직위나 급여, 기타 처우는 동일하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(서식 1)

산학협력중점교수(지정형) 추천서

스쿨		전공	
성명		직급	
전년도 산학협력 주요실적			
지정 후 계획			

년 월 일

스쿨원장 :

(서명)

교원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